



법률상식 ⑧

# 가집행과 강제집행



김 상 배

농협중앙회 하나로봉사실 과장

## 1. 피할수 없는 법률절차, 가압류와 가처분

우리 농업인은 남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것이 기본적인 생활태도이다.

그래서 평소에도 소송이나 고소, 고발 등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꼼꼼이 따져보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 부드럽게 마무리 짓고자 한다.

그런데 가끔 가압류나 가처분 통보를 받고 크게 당황하였던 일을 거의 모두 경험하였을 것이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내가 피하려해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진행시키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막상 현실로 닥치면 낭패감이 클뿐만아니라 대부분 당황하여 사태해결을 급하게 서두르게 되고 그 결과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은 대부분

전문적인 사업가들이나 구사하는 법률상의 특수기술인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평소 법률과 친숙하지 못한 우리 농업인들은 첫시작부터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률절차는 자신이 피하고자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 채권자의 의도와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출, 사료나 영농자재의 외상구입, 금전거래 등 영농과정에서 외부와의 상거래나 금전대차를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거래의 정산이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므로 누구라도 이러한 법률절차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보전절차와 강제집행중 금전채권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 2.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을 통틀어 보전처분 또는 보전절차(保全節次)라 한다.

가압류(假押留)란 받을돈, 즉 금전채권이냐 앞으로 돈으로 받게 될 청구권이 있을때 훗날 그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돈, 예금, 물건 등에 대해 임시로 압류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다.

가처분(假處分)은 지금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 훗날 그 물건에 대해 강제로 내뱉을 이르기 위해 임시로 어떤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다툼이나 소송의 최종적인 판결이나 승패가 확정될때까지 임시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압류, 처분의 날말앞에 “가(假)자를 붙인것으로서 보통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받게되면 채무자의 재산권이 억울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염려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토록 하는데 요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절차를 하는 이유는 어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몰래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갚지 않으려 발뺌하려 한다든가, 집을 샀는데 그 전 주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2중으로 팔고 도망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악덕 인사로부터 선량한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가압류는 토지나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압류」, 살림살이 같은 유체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하는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에 대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 가압류」 등이 있다.

가처분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매매나 양도를 못하게 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

## 3. 강제집행

채무자가 갚을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도 함부로 채

무자의 재산이나 금품을 뺏을수 없고 뺏으려 해도 안 된다.

채무자가 갚지 않아서 부득이 강제로 받아내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고 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식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문서를 「채무명의」라고 한다.

채무명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백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판결문이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덧붙은 미확정 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

이러한 채무명의에 법원직원이 이름을 쓰고 직인을 찍어 “위 정본을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아무개에게 부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써주는 것이 집행문인데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집행문은 재판을 한 1심법원이나 공증인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대개 500원정도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집행문을 얻게되면 법원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본격적인 채권 강제회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부동산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고 곧이어 입찰공고를 한다.

입찰날짜가 되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살가격을 써내면 집행관은 그중 최고가격을 써낸 사람을 가려내어 매수인으로 정해준다. 그리고 여러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가름하여 차례로 배당을 해줌으로써 강제집행절차가 끝나게 된다.

살림살이 같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도 부동산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

그러나 동산이 있는 현장을 안내해야 한다든가, 채무자가 일부러 현장을 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명 이상의 참여인을 확보해둔다든가, 경매시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채권자가 경매에 참가하여 물건을 살 수도 있으므로 현장에 나가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

도의 상식은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갖고 있는것을 알게되면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예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 될 것이다.

#### 4. 강제집행을 뒷바침하는 제도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채무자의 재산내용을 알지못해 어려움을 겪을때가 있다.

부동산 관련 정보는 행정정보의 규제가 있고 은행 예금도 금융실명제의 장벽이 있어서 본인이 아닌 사람만 알기 어렵고 또 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려줄리가 없기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때는 앞에서 설명한 판결문과 강제경매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대해 채무자에게 재산관계 내용을 소상히 밝히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하면 편리하다.

이것을 『재산관계 명시제도』라 하는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 명령을 하게되면 채무자는 현재의 재산과 지난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지난 2년 이내에 남에게 기증하거나 무상으로 넘긴 재산의 목록을 제출해야하고 그 내용에 허위가 없다는 선서까지 해야 한다.

만약 이 명령대로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채무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고 형을 받더라도 그의무는 변함이 없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앞으로 3개월이내에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때 법원은 3월까지의 서류제출을 연기해 줄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금액의 3분의2이상을 갚는다면 다시 1개월까지 연기받을 수 있다.

또 이러한 법원의 여러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만들거나 법적절차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그 내용이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 행정기관에 통보되어 출입하는 민원인, 공무원, 일반인이 모두 알게되고 그것을 다시 복

사할 수도 있을뿐 아니라 그 채무가 완전히 없어졌으므로 그 이름을 지운다는 법원의 결정이 날때까지 계속 비치되어 공개되는 것이다.

#### 5. 알아두어야 할 일

가압류나 가처분된 물건을 팔거나 옮기거나 빼돌리거나 표지한 종이쪽을 떼어내거나 찢어버리는 경우, 또 출입이 금지된 논밭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되어 이미 진행중인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벌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집행관이 주택에 사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켰는데 다시 그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경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는 등 형사처벌조항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러한 설명은 대부분 법의 기초적인 원칙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사건별로 그 원인과 진행경과가 달라지게 되어 기본원칙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게 된다. 또 집행 당사자가 될 경우 당황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되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감정이 생겨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절차에 말려들게 되면 먼저 그 일의 원인과 경과를 냉정히 따져보고 차분히 정리한 다음 관련서류들을 모두 챙겨 가까운 농협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자문을 구하는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물품 대금을 두고 물품의 품질이나 성능 불량과 대금 독촉이 서로 맞선 경우라면 역시 농협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여 판단을 구하는것이 최선이다.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모두 농업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방사무소는 각 검찰청과 검찰지청에 있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우편번호 137-800, 전화 02-3460-3000)에 있다. ☎

(필자연락처: (02)397-5555)